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7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이 핵가족이 대다수인 현재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에 사용권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안 제20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가족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권자 및 사용권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4.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가족봉안시설의 안치 대상 등) ① (생략) ② 가족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권자 및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자의 가족으로 한다.	제20조의3(가족봉안시설의 안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족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권자 및 사용권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4.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세출의 순증가액이나 세입의 순감소액이 없음

4. 작성자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장 이 응 길